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운영 관련 안건

## < 목 차 >

1. [논의사안 1] 사무국장 임용계획 .....	1
2. [논의사안 2] 공로패 수여사업 개선 .....	5
3. [논의사안 3] 협의회 규정 제·개정 .....	8
4. [공지사안] 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	9

2020. 8.



(사)공공도서관협의회

# 1 사무국장 임용 계획

## □ 추진 배경

- 협의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키로 함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사무국장 임용 추진
  - \* 공공협 제2019-101호 (“2019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 2019.11.19.), 사무국 구성 동의
  - \* 공공협 제2020-98호 (“202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 2020.7.27.), 사무국 구성 의결

## □ 직위 개요

- (직위명) 공공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 (근거) 정관 제36조(사무조직), 직제 및 보수규정 제3조(사무국장)
- (임기<안>)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 의견수렴 항목
- (담당업무) 회무 처리 및 사무국 업무 통괄, 소속 지원 지휘·감독
- (자격요건) 2급 정사서 이상, 도서관 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등
- (처우) 월급여 150만원 \* 근무시간 조정(주 4회), 4대 보험 가입

## □ 추진 일정

- 사무국장 공고 : 10월
- 심사위원회(서류 및 면접) : 10월
- 운영위원회 임면 동의 및 규정 개정 : 11월
- 사무국장 임용 : 12월

붙임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공고(안) 1부

## [붙임]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공고(안)

(사)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는 사무국을 통괄할 사무국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4일  
(사)공공도서관협의회장

###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 1명
- 채용직책 : 사무국장

### 2. 근무조건 \* 협의회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음

- 보 수 : 협의회 내규에 따름
  - 월 150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별도
- 근무시간 : 주 4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4대 보험, 퇴직급여 등
- 임기 : 2년의 임기로 하되,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1회 연임 가능

### 3. 응시자격

#### 가.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서자격증(2급 정사서 이상) 소지한 자
- 도서관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자

#### 나.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취업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증

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새터민 등(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 우대사항은 1차 서류전형 시에만 적용

####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 10. 5.(월) ~ 10. 16.(금)
-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kpla@korea.kr)로만 접수
  - ※ 메일 제목과 첨부파일에 [채용지원]\_지원자 이름, 예) [채용지원]\_홍길동

#### 5. 채용시험 방법 및 일정(안)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0. 10. 21.(수) ※합격자에 한해 문자 통보
- 면접시험 : '20. 10. 26.(월)
  - 서류전형은 3~5배수로 선발하여 면접 실시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결격사유 조회 : '20. 11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 11월중
- 근무시작일 : '20. 12. 1.(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응시자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 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기타 서류>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통제출 서류를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해 기타 서류 제출

#### 7. 기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 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채용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이메일(kpl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검토 배경

- '19년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2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공로패 수여 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 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속을 결정함  
\* 근거 : 공공협 제2020-37("202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알림", 2020.2.28.)
- 공로패 수여사업을 지속하되, 사업비의 효율적 지출과 공로패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공로패 수령 기준 보완 필요  
\* 근거 : 공공도서관협의회 운영위('20.7.23.)에서 '개선은 하되, 제안된 개선안(기관장의 경우 수공기간 2년 이상으로 강화) 이외에 복수의 개선안에 대해 내부 의견수렴 진행'키로 결정

## □ 사업 현황

- (현황) 공로패는 협의회 소속 도서관 직원의 노고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명예) 퇴임 도서관장 또는 20년 이상 도서관 근속 정년(명예) 퇴직 직원에 수여함 \* 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 (수여 실적)'19년도 기준 164점 수여 (10,824천원 소요)
- (문제점) 공로패 수여 규모가 크게 증가, 기관장과 직원 간 공적기간의 격차(12.3년 vs 32.4년)가 극심, 단기 도서관 근무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적절성에 대한 이견 존재  
\* 도서관별 기관장 3명의 재직기간은 평균 1.6년이며 2년미만의 재직기간이 73.5%를 차지

## □ 개선 방안안 \* 의견수렴 항목

- (1안) 기관장 공로패 수여 공적기간 신설(도서관 실근무 1년 이상)
- (2안) 기준은 현행 유지하되, 공로패를 「상장」으로 대체
- (3안) 기준은 현행 유지하되, 공로패를 「기념품\*」으로 대체

\* 기념품안(2만원 내외) : 명함집, 자개 USB 메모리, 자개 볼펜, 골드 수저 등

현행	1안	2안	3안
○내용: 공로패 수여 ○대상 - 정년(명예) 퇴임 도서관장 -20년 이상 도서관 근속정년(명예) 퇴직 직원 *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내용: 공로패 수여 ○대상 -정년(명예) 퇴임 도서관장 (도서관 실근무 1년 이상) -20년 이상 도서관 근속 정년(명예) 퇴직 직원 *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내용: 상장 수여 ○대상 - 정년(명예) 퇴임 도서관장 -20년 이상 도서관 근속 정년(명예) 퇴직 직원 *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내용: 기념품 수여 ○대상 - 정년(명예) 퇴임 도서관장 -20년 이상 도서관 근속 정년(명예) 퇴직 직원 *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 [붙임] 공로패 사업현황

### □ 사업 개요

- (목적) 협의회 소속 도서관 직원의 노고 격려 및 사기 진작
- (대상) 정년(명예) 퇴임 도서관장 또는 20년 이상 도서관 근속 정년(명예) 퇴직 직원 \* 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 (사업 절차) 상·하반기 2회 실시
  - 기관별 추천 요청(5월, 11월) → 추천(6월, 12월) → 공로패 발송(6월중순, 12월중순) → 기관별 수여(6월말, 12월말)
  - 지부를 통해 추천받은 대상자에게 소속 도서관에서 수여
- (수여 실적) 1,192점 \* 법인 설립(2007년) 이후 현재(20년도 상반기)까지

### □ 추진 경과

- 2007년 임의단체 초기부터 공로패 수여 사업 시작
- 2011년 1차 운영위원회에 ‘수여 범위 확대 토의 안건’ 상정  
10년 이상, 무기계약직까지 범위 확대 ⇒ 부결(현행 유지)
- 2014년 수여 대상에 ‘공로연수자’ 추가
- 2019년 2차 실무자회의에서 ‘동기간 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의 정확한 기준 범위 공지

### □ 공로패 현황 분석

- (규모) 회원관 증가 및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라 최근 공로패 수여 규모가 크게 증가

《 최근 10년 공로패 수여 규모 및 소요예산 》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반기
회원관(누적)	522	538	547	566	593	621	661	693	736	755	779
수량(개)	52	46	59	53	92	118	92	119	121	164	83
금액(천원)	3,120	2,760	3,540	3,180	6,072	7,788	6,072	7,854	7,986	10,824	5,478

(참고) 출생년도별 공무원 분포도

- 베이비부머 :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이 끝난 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중간생략) 2019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

출생년도	55년생 이상	56~57년생	58~59년생	60~61년생	62~63년생	64~68년생
은퇴년도	~15년도	16~17년도	18~19년도	20~21년도	22~23년도	24~28년도
연령*	만 63세이상	만 61세~62세	만 59세~60세	만 57~58세	만 55~56세	만 50~54세
합계	1,156	5,411	23,160	47,993	52,925	153,923
국가공무원	995	5,254	14,306	26,141	32,719	94,340
지방공무원	161	157	8,854	21,852	20,206	59,583

\* 2018년도 기준 연령 /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베이비부머), 인사혁신처\_2018년 공무원총조사

- (구성) 수여 대상 구성의 경우 기관장이 직원(20년 이상 도서관 근무자)보다 1.7~2배 많은데, 이는 퇴직 압박 시점에 기관장 발령이 나는 인사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공로패 수여 대상별 현황 》

구분	'17	'18	'19	'20 상반기	합계
기관장	75명(63%)	79명(65.3%)	104명(63.4%)	55명(66.3%)	313명(64.3%)
직원	44명(37%)	42명(32.7%)	60명(36.6%)	28명(33.7%)	174명(35.7%)
합계	119명(100%)	121명(100%)	164명(100%)	83명(100%)	487명(100%)

- (도서관 근무기간) 직원의 평균경력은 32.4년인 반면 기관장 평균은 12.3년에 불과하고 그중 사서의 직렬 기관장 평균은 2.4년임

《 기관장과 직원 평균 근무기간 비교 》

구분	직원	기관장	
		(전체)	(사서의 직렬)
도서관 근무기간(평균)	32.4년	12.3년	2.4년

- (기관장 재직기간) 수령 기관별 기관장 평균 재직기간은 1.6년이며 2년 미만의 재직기간이 73.5%를 차지함

《 기관장 평균 재직기간 분포 》

구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합계
기관수	22	72	27	7	128
비율	17.2%	56.3%	21.1%	5.5%	100%

\* 기관장 평균 재직기간 : 1.6년(기관별 최근 퇴직기관장(3명) 평균)



### 3 협의회 규정 제·개정

#### □ 추진 배경

- 사무국장 신규채용 계획에 따라 협의회 인사 운영에 있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협의회 규정의 일부를 개정
- 사무국 독립을 추진함에 따라 그간 미비했던 규정을 신규 제정 및 재정비

#### □ 주요 내용 \* 의견수렴 항목

##### ○ (규정 개정안)

- (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1호) 사무국장 정년 조항 개정
- (직제 및 보수규정 제3조제2항) 사무국장 임기제 조항 신설  
\* 기 2항은 3항으로 변경
- (직제 및 보수규정 별표 1) 사무국장 및 사무원 직급 등 조정

##### [신규대조표]

구분	현행	개정안
인사규정	<p>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직급은 &lt;별표1&gt;과 같다.</p> <p>제2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1. 사무국장 : <u>65세</u></p> <p>2. <u>4급 이하</u> : 60세</p> <p>② (생략)</p>	<p>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직급은 &lt;별표1&gt;과 같다.</p> <p>제24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p> <p>1. ----- : <u>계약에 따른다.</u></p> <p>2. <u>사무원(사무국장 제외)</u> : -----</p> <p>② (현행과 같음)</p>
직제 및 보수규정	<p>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정관에 의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lt;신 설&gt;</p>	<p>제3조(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1회 연임할 수 있다.</u></p>

구분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6조(직원) ① 직원은 사무원과 고용원으로 구분하며 그 직급 구분은 “ <u>별표1</u> ”과 같다. ② 직급별 승진 최저 근무 소요기간은 “ <u>별표1</u> ”과 같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원) ① 직원은 사무원과 고용원으로 구분하며 그 직급 구분은 “ <u>별표1</u> ”과 같다. ② 직급별 승진 최저 근무 소요기간은 “ <u>별표1</u> ”과 같다. ③ (현행과 같음)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u>&lt;단서조항 신설&gt;</u>	제9조(근무시간) (현행과 같음)  <u>단 협의회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할 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u>																								
별표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보 직</th> <th>직 급</th> <th>준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직급</th> </tr> </thead> <tbody> <tr> <td>사무국장</td> <td>사무국장</td> <td>3급</td> <td>3급(부이사관)</td> </tr> <tr> <td>사무원</td> <td>과장 (팀장)</td> <td>4급</td> <td>4급(서기관)</td> </tr> </tbody> </table>	구분	보 직	직 급	준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직급	사무국장	사무국장	3급	3급(부이사관)	사무원	과장 (팀장)	4급	4급(서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보 직</th> <th>직 급</th> <th>준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직급</th> </tr> </thead> <tbody> <tr> <td>사무국장</td> <td>사무국장</td> <td>4급</td> <td>4급(서기관)</td> </tr> <tr> <td>사무원</td> <td>과장 (팀장)</td> <td>5급</td> <td>5급(사무관)</td> </tr> </tbody> </table>	구분	보 직	직 급	준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직급	사무국장	사무국장	4급	4급(서기관)	사무원	과장 (팀장)	5급	5급(사무관)
구분	보 직	직 급	준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직급																							
사무국장	사무국장	3급	3급(부이사관)																							
사무원	과장 (팀장)	4급	4급(서기관)																							
구분	보 직	직 급	준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직급																							
사무국장	사무국장	4급	4급(서기관)																							
사무원	과장 (팀장)	5급	5급(사무관)																							

○ (규정 제정안)

- 회계규정, 회원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문서관리규정

\* 제정 규정 확정시 협의회 정관 제36조제3항에 일부 규정 명시

- (현행) ③사무국의 직제·보수·인사·회계·복무규정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변경) ③사무국의 직제·보수·인사·회계·복무 및 ○○규정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진 일정

- 규정 제개정 관련 의견수렴 : 8월
- 실무자회의 논의 : 8월말
- 운영위원회 승인 : 11월

## 4 [공지사항] 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 □ 추진 배경

- 노후화된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회원기관의 정보 접근성 향상
- 웹개발 보안 준수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 □ 개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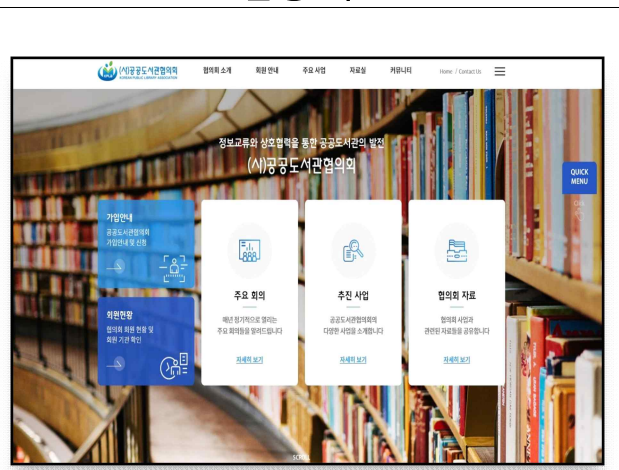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등 웹개발 보안 준수 서버 운용
  - 최신 트렌드에 맞춘 메인화면 및 서브화면 디자인 변경
  - 행사 신청접수 기능, 모바일 반응형 웹 구현 등
  - 운영자의 원활한 작업을 위한 업로드 용량 확대 등
  - 기존 홈페이지 주요 기능에 대한 보존 및 안정적 구현
- (소요예산) 7,70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메인 화면 전후)

<변경 전>



※ 노후화로 인해 웹접근성 및 호환성 미확보

<변경 후>



※ 호환성 준수 및 반응형 웹 구현 등 기능 강화

### □ 오픈 시점 : 8월 중순